

OCT 2020. Issue 144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친절한 문자씨!

 **Cover Story**

06 ... 미국의 화웨이 제재 현황 및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재편

 **FTA News**

08 ...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9월 21일부터 시행

 **Inside Vietnam**

12 ... 임가공 기업이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의 통관 절차 및 관세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15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관세 관련 심판사례**

17 ...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의 확정을 관세법 제34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친절한 문자씨!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
남을 위하는 따뜻한 말과 행동.
세종대왕이 꿈꾼 살맛 나고
올바른 세상이 되는 길입니다.
”



땡땡!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인파 물리는 단풍여행 대신, 집 근처 한적한 장소에서 가을 정취를 즐기세요...!'

친절한 정부로부터 도착한 친절한 안내 문자입니다. 코로나 19 사태의 발발 이후에 국민에 대한 정부의 친절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풍은 북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먼저 물이 듭니다. 산 정상 높은 곳의 나무에서부터 물들기 시작하여 점차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산 전체의 나무 중에 20% 정도가 물들면 첫 단풍이라 하고, 80%정도가 물들면 절정이라고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은 알록달록 단풍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번 달 Cover Story 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현황 및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재편'입니다. FTA News 는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9 월 21 일부터 시행'이며, 베트남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Inside Vietnam 은 '임가공 기업이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의 통관 절차 및 관세'입니다. 또한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이며, 관세 관련 심판사례는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의 확정을 관세법 제 34 조의 3 제 3 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나랏말싸·미

공휴일로 지정된 한글날에 100세 노교수는 단풍여행 대신 도심으로 가셨습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은 버스와 철책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용건을 물어본 젊은 경찰은 교수님의 발걸음을 돌려세웠습니다. 광장은 접근금지의 장소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원인인 집회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습니다.

한국문명의 전환점이 된 한글은 세종대왕의 업적입니다.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등의 집현전 소장학자들과 예조판서 정인지 및 세자인 문종, 수양대군, 안평대군 등과 힘을 합해 만들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모으고 다양한 시도를 하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오로지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는[訓民] 우리의 소리글자[正音]’**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매한 백성에게 한자로 기록된 법조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지키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리글자로 기록되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조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지켜야 할 큰 조항’인 『삼강행실도』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한글로 읽기 쉽게 만들면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與民(여민) 리더십 - with the people’

하늘이 낸 임금으로 추앙 받은 세종대왕의 업적은 한글창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32년의 재위기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북방으로 영토를 넓히고 남쪽으로는 강건하게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과학사기술사사전』에는 동서양 과학기술 성과가 시기별, 국가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15세기 전반에 전세계 44건의 성과 중 21건이 한국에서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Korea 21건, China 4건, Japan 0건, Other Countries 19건이었습니다.

측우기, 혼천의, 석빙고, 금속활자, 자격루(자동 물시계), 양부일구(오목 해시계)등의 발명과 농사직설, 칠정산, 의방유취 편찬 등의 모든 업적은 백성과 함께 가고자 하는 지치지 않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게 된다.'는 뚜렷한 비전이 바탕이 됩니다. 백성을 하늘이 맡겨준 존재라고 생각한 세종은 백성들과 더불어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단풍 여행을 가네 마네 하며 산 아래 컨이 부산스럽지만 높은 산에는 이미 첫 눈이 왔습니다. 산 위에는 서리가 쌓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또 아래로 아래로 흘러갑니다. 계절의 변화를 사람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해야 합니다.

띵동! 문자가 왔습니다! '마스크 쓰기, 위생관리, 거리두기 준수...!'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코로나 19 위기를 풀 해법으로 '이타주의'를 제시합니다.**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생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애'를 버리고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말과 행동. 세종대왕이 꿈꾼 살맛나고 올바른 세상이 되는 길입니다.

이번 주말엔 단풍여행 대신에 세종대왕을 뵈러 갈까요? 자기애를 버리고 이타주의를 실행하신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혹 아나요? 오래오래 바라보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분과 같은 따뜻한 이타주의의 싹이 나올지?

감사합니다.

*박현모. 2014. 『세종이라면』. 미다스북스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 이민정 기자. 2020. 「'코로나가 바꾼 세계' 석학 인터뷰」. 중앙일보





Cover Story

미국의 화웨이 제재 현황 및 반도체 메모리 시장의 재편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국내 동향

연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다. 11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표심을 염두에 둔 자국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는 2019년 기준 애플 다음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화웨이를 반도체 고객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매출의 3%, SK하이닉스는 매출의 11%나 차지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다.

미국의 제재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 5월 1차 제재를 발표하였고, 그로부터 1년 후 2020년 5월 더욱 강화된 2차 제재안을 발표하였다. 현재 9월 15일부터 미국 밖으로부터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재료, 기술, 소프트웨어를 화웨이에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정부는 사전승인을 결코 쉽게 내어주진 않을 것이다. 결국 화웨이의 미국 시장 퇴출 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서은실 관세사

esseo@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품목분류
- 관세자문

국내 기업 SK하이닉스에게 화웨이는 매출의 11%를 차지하는 영향력 있는 고객사다. 삼성전자의 경우 화웨이에 반도체를 납품하면서도 스마트 통신장비 시장에서는 경쟁자 입장이기에 이를 통해 시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0.8월 기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전자가 22%, 1위차지, 화웨이 16% (시장조사: 카운터포인트리치, 9.29)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모두 미국 정부에 사전승인을 신청을 했으나 10월 초인 현재까지도 별다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반도체시장의 재편

이번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당장의 단기적인 매출 하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 관련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지 못하게 돼도 다른 경쟁사들 오포·비보, 샤오미 등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생산규모 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필연적 부품 확보가 중요해질 것이다.

우리 기업들도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확대를 통해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전세계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시장진입이 필요하다. 과거 단순히 반도체 설계 기술에만 투자했던 미국도 점차 제조시설 부족에 따른 시장 확대의 한계를 느껴 제조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정권 초창기부터 반도체 리쇼어링(reshoring, 제조업 본국 회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어려운 시장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자국시장 보호를 위한 무역 조치들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고 있다. 복잡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정부차원에서도 다각도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FTA News

인도, FTA 원산지 관리 강화 9월 21일부터 시행

인도의 관세법 개정

인도 정부는 현재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이행과 관련 원산지 관리를 위해 2020년 4월 관세법을 개정했다. 또한 2020년 8월 21일에는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원산지관리 규칙(Customs Administration of Rules of Origin under Trade Agreements Rules[약칭: CAROTAR 2020])」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하고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고시했다.



홍혜현 관세사
hhhong@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관세환급

주요 내용

1. 특혜관세율을 신청하는 수입자 의무 강화

수입자는 기존에 특혜관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나아가 원산지 기준 충족(부가가치 비율 및 품목기준 포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규칙이 정하는 방식(FORM I)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합당한 주의가 요구 된다. 이로 인해 인도 수출기업들은 수입자로부터 원산지 증명 자료에 대한 정보를 요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2. 담당 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 강화

담당 공무원은 원산지기준 불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에 따른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를 영업일 10일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원산지 증명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한 내 미제출할 경우 세관은 협정에 따른 검증을 실시하거나 특혜 대우를 중지 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의 원산지 검증 권한을 강화 시켰다.

3. 검증 없이 특혜배제가 가능한 기준 마련

협정에 따른 양허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물품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발급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증 없이 특혜 배제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였다.

또한 수출물품이 인도 관세 당국에 의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불충족 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 동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동일 물품은 이후 수입 시에는 물론, 과거 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추가 원산지검증 없이 특혜관세를 배제 할 수 있다.

FORM I 구성

인도 세관 당국의 원산지 관리 강화로 수입자는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정보를 FORM I 서식에 맞게 작성, 보유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FORM I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Section II

- 수입면장 제출 이후 작성한다.
- 수입자명, 서류(수입면장) 제출번호 및 날짜, 서류(수입면장)를 제출하는 세관
- 관세 혜택 물품

연번	품목명	HS 코드

② Section III의 Part A

- Section III의 경우 물품 수입 전에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수입품 생산을 위해 원산지 국가에서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간단히 서술한다.
- 주*: (예시) ▲ 완전생산기준(WO) ▲ 부가가치 기준(RVC) ▲ 세번변경기준
(CTH: 4 단위 변경기준, CTS: 6 단위 변경기준, CC: 2 단위 변경기준)
- 완전생산제품의 경우 FTA 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완전생산제품의 프로세스를 설명한다.
 - 완전생산제품이 아닌 경우 아래 내용을 기입한다.

품목명	생산 프로세스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구분

③ Section III의 Part B

- 완전생산제품이 아닐 경우 HS code 에 따른 제품별 각 재료·부품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기입하며, 증빙이 안 될 경우 역외산 재료로 취급된다.

역내산 재료/원자재 설명	최종제품의 생산자 제조여부 (예/아니오)	역내 제3자 조달 여부 (예/아니오)	제3자로부터 조달된 경우 최종 물품생산자의 규칙 준수 여부 및 해당 원자재의 원산지증빙 서류 구비 여부 (예/아니오)

(역내산 재료/원자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none'이라고 적는다.)

- 추가 정보

a.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최소기준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역내부가가치 비율 또는 양을 서술하십시오
b.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누적기준을 적용 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누적방식 및 범위를 서술하십시오
c.	원산지 인정기준으로 간접재료, 중간재, 중립요소 등이 적용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사용된 기준을 설명하십시오. 또한 포함된 재료를 서술하십시오
d.	역내가치 포함비율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아래 정보를 서술하십시오 (1) 역내가치비율(%) (2)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 (예: 재료비, 이윤, 노무비, 간접비 등)
e.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CTC기준이 적용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비원산지 재료의 HS 코드를 적으시오
f.	공정기준을 적용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적용기준을 서술하십시오
g.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 되었는가?	예/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십시오
h.	원산지국가에서 바로 탁송된 것인가?	예/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FTA 조항에 따라 그렇게 확인된 바 있는가? 이 제품이 직접운송의 조건에 부합하는지가 어떻게 확인 되었는가?

시사점

인도 수입자가 특혜 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FORM I에는 수입자에 대한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수입품에 대한 정보 및 특혜 대상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입증정보(역내가치비율, 품목별원산지기준 등)가 포함된다. 본 내용들은 사안에 따라 수출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정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자와 수입자 양측은 제공할 정보의 목록과 범위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화된 인도 세관당국의 원산지 관리 체계에 따라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즉각 정보 제공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인도 수출이 빈번한 수출기업의 경우 본 개정 사항과 공지된 양식 등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여 수입자 측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Inside Vietnam

임가공 기업이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의 통관 절차 및 관세

수입 전 해외의 거래자와 임가공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가공 계약 품목과 수입 예정 원재료를 등록한 베트남의 임가공 수출 기업은,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가공 기업은 관세를 유예 받은 수입 물품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사용한 내역에 대해 정산(Liquidation) 보고의 의무가 있어,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비로소 관세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가공 기업은 수출물품 생산을 위해 일부 외주 가공을 맡길 수 있는데 외주 가공을 맡긴 업체가 EPE 또는 Non-EPE 인지에 따라 외주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제공할 때 및 가공된 물품을 외주가공기업으로부터 수령할 때의 통관 절차 및 관세 납부 여부가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박 성 현 관세사
sh.park@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FTA 교육
- 관세환급
- 품목분류

I. 통관 절차

1. 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임가공 기업은 수출입 신고 의무가 있으나, EPE는 수출입 신고 의무가 없다.

2. Non-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임가공 기업과 외주가공 업체는 모두 수출입 신고 의무가 없다.

* 두 경우 모두 원자재가 외주가공 기업에 인도되기 전에 회사명, 본사 주소, 자체 제조시설 및 외주가공업체 주소, 외주가공기업에 원재료를 전달하는 시기를 세관 당국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관련근거: circular 38/2015/TT-BTC 제62조 제2항, 제76조 제2항

II. 관세

1. 외주 가공을 위해 원재료를 제공할 때

1) 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수출관세 면세이나, 해당 원재료가 재료가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2016/ND-CP 제11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천연 자원인 경우 수출 관세가 부과된다.

2) Non-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수출관세 비대상 (수출신고 미대상)

※ 관련근거: 수출입세법 107/2016/QH13 제16조 제6항, 수출입세법 시행령 134/2016/ND-CP 제11조 제1항

2. 외주 가공된 물품을 수령할 때

1) 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임가공 기업은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과세가격은 다음과 같다.

- EPE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료 및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공품을 구성하는 모든 원재료를 임가공 기업이 EPE에 공급함을 의미함), 임가공 기업이 가공된 물품을 수입할 때 과세가격은 임가공비만 해당한다.
- EPE가 해외에서 수입한 원자재 및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EPE가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의 가격과 임가공비를 합한 금액이다.

2) Non-EPE에 외주 가공을 맡기는 경우

수입관세 비대상 (수입통관 미대상)

※ 관련근거: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 등의 시행규칙 39/2015/TT-BTC 제17조 제3항, Official Letter No. 3018/TCHQ-TXNK (2020.5.11), No. 5864/TCHQ-TXNK(2020.9.4)

※ 본 내용은 베트남 현지 배포 자료를 근거로 신한관세법인이 구성, 재정리한 것으로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 베트남 소식 관련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베트남관세법인

박은실 법인장: +84-(0)24-7300-8630 [VN], +82-(0)70-5222-7280(KR) / espark@shcs.kr, scv@shcs.kr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이 사: +82-(0)2-3448-1181 [KR] / dkchoi@shcs.kr

박성현 관세사: +82-(0)2-3448-1181 [KR] / sh.park@shcs.kr



관세무역 관련 법령변경 소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령 체계 일치화 및 표시사항 규제 완화 등을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 추진하기 위해 개정



나 지원 관세사
jwna@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FTA 컨설팅
- 기업심사
- 품목분류

주요 개정내용

가. 전기용품 세관장확인물품의 확인 절차 규정 (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 등록 및 주요부품 변경에 따른 변경 인증 절차 명확화 (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안전인증기관 변경 신청 절차 규정(제21조)

라. 단전지 표시사항에 대한 규제 완화(제59조제2항)

- 안전인증 표시 등을 모두 단전지 제품에 표시해야 했지만, 모델명을 제외한 표시사항은 포장지 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 등 →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조정(별표1, 별표20)

- 전동공구의 안전관리 수준이 안전인증대상에서 안전확인대상으로 관리 수준 완화

바. 안전기준의 표시사항과 모델구분의 일치화(별표9, 별표10,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 완화(별표19)

- 현행 정기검사 주기는 2년에 1회로 규정하고 있어, 기존 3개월 또는 1년의 자체검사 주기를 2년으로 완화하고 최소 검사 주기를 삭제

아. LED조명 시스템 모델구분 세부기준 변경 등(별표1, 별표9, 별표20)

- 안전관리대상 용량범위 지정 및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방수보호등급 모델구분 삭제 및 구동장치 모델구분 신설
- 안전관리부품 목록에서 중요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관세 관련 심판사례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 따른 판결의 확정을 관세법 제34조의3 제3항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61888 판결]

사실관계 (일부 축약)

가. 원고는 영국 런던에 체류 중 개설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한국의 소비자들이 물품을 주문 하면 원고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12,14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 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였다.



윤 영 수 관세사
ysyoon@shcs.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FTA 관련 자문
- 관세환급

-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과세기간 동안 영국에서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부정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1. 19. 원고에게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과소신고가산세(관세) 000원, 과소신고가산세(내국세) 0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한편 대구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2. 4. 12. 원고가 관세 부과 대상인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거주자에게 판매하였으면서도 세관에는 국내 거주자가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부정 방법으로 감면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따라 원고를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하였다.
- 라.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5. 2. 11.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000원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2017. 1. 19.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2017. 5. 31.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7. 7. 18. 피고에게 관련 형사판결을 근거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어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게 위 주장 사유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및 피고 주장 (대구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111 판결 인용)

원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사실 역시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형사판결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에 따른 관세의 납세의무자, 즉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라고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인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 사유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 주장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사유로서의 '판결'에는 형사판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그 판결에 형사판결도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물품 수입에 관한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내세운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심리 및 판결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판결문 참조)

판결의 의의

2011.12.31 개정 관세법에서는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법령에서 '소송에 대한 판결'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해 대법원 판결은,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내국세 및 관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한국의 누적 판례를 보면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사유가 너무 엄격하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동 제도의 운영이 납세자의 권리구제라는 입법취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학계와 민간의 비판이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를 고려하는 납세자들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인정 사유에 대한 그간의 누적 판례를 충분히 참고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부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면서 과세관청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